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2707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4. 28.

판결 선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9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6.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6.접수 제359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4. 9. 24.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C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59269호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2020. 11. 6. 현재 원고는 C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액은 5,408,392원에 이른 다(원금은 1,837,761원이다).

나. 망 E의 사망,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고와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0. 6.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F,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및 G이 있는데, 피고와 C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0. 8.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연수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C는 이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기여분과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기여분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는 망인과 F의 장남으로서 2007. 1. 4.경부터 부모인 망인과 F을 부양하고 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현재도 F을 부양하고 있다.
- ②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망인은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로 인한 대출이자 는 피고가 납부해 오고 있다. 또한 망인이 1992. 9. 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 ③ 피고는 망인의 병원비, 장례식 비용 등을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단독으로 부담하였다.
- ④ 공동상속인인 F, C, G은 모두, 망인의 유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인데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실제 가치는 크지 않고, 피고가 망인과 F을 오랫동안 부양해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해 온 점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기여분의 판단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실질적으로 100%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기여분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하여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피고의 기여분을 50%로 산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C의 특별수익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C에게 2013. 4. 25. 1,000만 원, 2014. 3. 27.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망인에게 위 금전을 지급한 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C는 위 합계액 2,800만 원을 망인에게서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한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1)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0. 6. 30.에 근접한 2020.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1 시세 평균가액은 272,500,000원이다(을 제3호증). 그런데 망인은 2014. 11. 3. 이 사건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을 제2호증), 위 담보채무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172,500,000원이 된다.

(2) 여기에서 피고의 기여분 50%를 공제하면 잔여 상속재산 가액은 86,250,00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동상속인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 (= 86,250,000원 × 법정상속분)
F	3/9	28,750,000원
피고, C, G	각 2/9	19,166,666원

(3) 그런데, C의 특별수익액은 28,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특별수익액을 빼면 C가 상속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